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「관세법」에 근거한 ‘국가관세종합정보망’을 추가하고,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·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715호, 2023. 8. 24. 공포, 2024. 9. 15. 시행)됨에 따라, 감염병 교육 대상과 범위, 그 내용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세청과 협의예정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4(감염병 교육의 실시) ①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여야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1.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

2. 감염병 유행 주요 사례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, 제12조,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, 법 제18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매년 10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③ 질병관리청장은 효율적인 감염병 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 운영·관리 및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감염병 예방·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16조의4(감염병 교육의 실시)</u> <u>①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</u> <u>감염병 교육을 실시하여야하는</u> <u>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공</u> <u>무원 및 직원 등에게 각 호의</u> <u>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</u> <u>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여야</u> <u>한다.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</u> <u>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</u> <u>로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1.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</u> <u>련 법령</u> <u>2. 감염병 유행 주요 사례</u> 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지역</u> <u>보건법」 제10조, 제12조, 제13</u> <u>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역보건</u> <u>의료기관 및 「농어촌 등 보건</u> <u>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</u> <u>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소속 공</u> <u>무원 및 직원은 매년 4시간 이</u> <u>상, 법 제18조제2항 및 이 영 제</u> <u>15조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매</u> <u>년 10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</u> <u>받아야 한다.</u>

관리에 관한 인적, 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
탁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 교육의 실시
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.

제22조의3제3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로
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관세법」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
9월 15일부터 시행하고, 제16조의4제1항및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
1일부터 실시하는 감염병 교육부터 적용한다.

제22조의3(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) ①·② (생략)	③ <u>질병관리청장은 효율적인 감염병 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 운영·관리 및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감염병 예방·관리에 관한 인적, 물적 자원을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
③ 법 제40조의5제3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”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. 1.·2. (생략) <u><신설></u>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<u>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.</u>
3. ~ 12. (생략)	③ ----- ----- ----- -----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「관세법」 제327조에 따른 <u>국가관세종합정보망</u> 4. ~ 13. (현행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	
연락처	(043) 719 - 7138